

❖ 정부시책 ❖

수출입 承認制 개편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수출입 승인제가 대폭 개편된다.

즉 인적자격, 물품의 이동,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전의 승인요건이 무역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인적자격에 대한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수출입 승인요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승인절차에서 배제된다.

또 수출입승인 대상이 모든 수출입 물품에서 수출입공고·수출입별도공고 등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대폭 축소되고 수출입 승인기관도 이를 수출입 관련공고에서 지정·고시한 관·단체로 일원화된다.

이를 절차도로 보면 수출의 경우 종전 매매계약 체결→수출추천→수출승인→수출신고→대금회수→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치던 것이 개정령에서는 매매계약체결→수출승인→수출신고→사후관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수입절차 역시 종전 수입계약 체결→수입추천→수입승인→대금결제→수입신고→사후관리에서 수입계약 체결→수입승인→수입신고→사후관리로 간소화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전 이원화됐던 수

출입 승인과 추천절차가 수출입승인 절차로 일원화된 점이다.

종전에는 수출입관련 공고에서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수출입추천을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야 됐으나 개정령에서는 수출입관련 공고에서 지정한 기관 및 단체가 추천과 승인을 한데 묶어 곧바로 승인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수출입추천 및 승인기관이 일원화되고 승인요건에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수출입절차에서 외국환은행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업체는 수출입승인절차에서 외국환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사후관리에서도 대금회수 및 대금결제에 관한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 수출입 승인기관

기관·단체명	설립근거법령	대상 품목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공업발전법	산업설비수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업발전법	발전세트 전기기기

次世代 전지개발 820억 지원

차세대 전지산업의 기술개발에 오는 2001년까지 8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지연구조합이 설립된다.

통상산업부는 전지산업을 향후 국가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차세대 전지산업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는 육성대책에서 △니켈수소전지의 고용량화, 양산공정기술 개발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액개발 △리튬폴리머전지의 전해질개발 등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사업을 중기거점사업으로 지정, 오는 2001년까지 8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기거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업계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전지연구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신부는 또 첨단 소형축전지의 수입비중이 지난해 48%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번 미정으로 국내외 수급동향 파악이 어려워 시설투자나 연구방향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큰 축전지에 대해 별도의 세번항목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망간·알카리전지의 조정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전지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전지업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지원료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단가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團體隨契, 기술·품질 위주로 배정

앞으로 기술이나 품질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단체수의 계약에서 우대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 계약물품 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전면 개편,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을 기술 및 품질위주로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기준에서 품질수준 배점을 최고 55점(기존 45점)으로, 신기술개발 점수를 최고 26점(기

존 20점)으로 각각 높였다.

또 협동조합이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정 구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에 대해 기술개발, 품질향상 및 수출시장개척 분야의 의무사용 비율을 상향조정(15%에서 20%로)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물량배정 방법과 관련해 타품목과의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됐던 ‘연합회가 지방조합의 회원사를 직접 선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조합과 지방업체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 단체수의 계약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는데 품목별 연간 최저계약금액이 전국조합은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조합은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

로 각각 높아졌다.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엔 이듬해 물품지정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개정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납품제품의 품질수준이 우수한 업체가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간 경쟁이 가능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권한을 통상산업부로 부터 이관받음에 따라 올 상반기중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은 260개 물품, 89개 조합, 3조4천억원 규모가 예정돼 있다.

중기청, 국산기계 外貨貸出 확인 발급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대상품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3월 중순부터 과천 본청과 11개 지방청 및 사무소에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품목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대출품목확인서는 그동안 기계공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등 9개 생산자단체에서 발급해 왔는데 이들 단체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중기청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원할 올 외화대출자금 규모는 약 6억달러(5천억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의 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며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지원 총규모는 30억달러이며 중소기업에는 기계구입가액의 100%(동일인한도 1,500만달

러)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리보 + 1.5% 포인트. 최근 리보

금리가 5.5% 수준이므로 대략 7% 선에서 은행들이 자율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과학기술처는 최근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탁연구지원사업, 기술 무상양허사업, 기술자문사업, 창원지원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중소기업 및 기술지원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 기관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 (유형 I)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 따른 문제점을 과기처 출연연구기관에 위탁연구를 통해 해결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경쟁력 향상

나. 지원내용

- 과기처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중 80% 범위내에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지원
 - 시험분석, 측정, 검사 등에 해당하는 과제도 연구개발과 관련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다. 신청대상기관

-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을 위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위탁연구개발의뢰서를 과학기술정책 관리 연구소에 제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위탁연구 개발의뢰서를 검토하여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추천

의뢰.

- 의뢰받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통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 허 제5차사업(유형 II)

가. 사업목적

-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여 해당기술의 상업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고 무상양허된 기술이 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보유기관(정부출연(연), 대학, 국·공립(연)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중 80%는 정부에서 부담(20%는 기업에서 부담))

다. 신청대상기관

- 현재 실험실 규모 이상의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 포함), 국·공립연구기관과 보유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등록
- 이전대상기술을 무상양허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유기관이 등록한 기술을 열람하여 해당 기술보유기관 및 사업책임자를 선정
- 과제신청서는 기술보유기관의 사업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기술보유기관을 통하여 제출.

3. 중소기업기술자문사업(유형 III)

가. 사업목적

-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등 지원

다. 지원대상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과기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자문의뢰서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제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자문의뢰서를 검토하여 해당 출연연구기관에 추천의뢰.
- 의뢰받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원을 추천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통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제출.

◇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기술혁신

및 창업보육센터(TIC/TBI)를 활용하여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및 알선

- 자세한 사업내용은 1997년 3월중 별도 공고예정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기술혁신 및 창업보육센터(TIC/TBI)에 문의(042·869-4781~3)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997년 3월 4일~1997년 10월 31일(연중수시)

5.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사업관리실 연구성과팀(02·250-3131, 3183~6)

나. 사업안내 및 문의처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02·503-7627~8)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성과팀 (02·250-3131, 3183~6)
FAX : 253-8237)